

NEWSLETTER

April 2020

공정거래 그룹
Antitrust Group

CONTACT



변호사 정환

T: 02.772.4940
E: hwj@leeko.com

변호사 박장우

T: 02.6386.7870
E: jwp11@leeko.com

변호사 김지훈

T: 02.772.5978
E: jhg@leeko.com**‘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제67조 및 제68조에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치 수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 경고 등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을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I. 주요 제정 내용**1. 적용범위**

* 고발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 ①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8조)
- ② 당해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7항)
- ③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3조 제1항)
- ④ 채무보증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3조 제2항)
- ⑤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

2. 고발조치 수준 관련 고려사항

* 고발조치 수준은 ① 행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②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 위반 인식 여부, 행위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그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합니다.

인식가능성 정도	예시
현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반 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정자료 제출 시 제출 의무자 또는 대리인 본인이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식 소유 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친족 관계, 거래 관계, 출자 관계 등에 비추어 행위자가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경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부 자료를 오기하였으나 함께 제출한 다른 자료를 통하여 사실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그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합니다.

중대성 정도	예시
현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대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된 경우)과 병행하여 이루어진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정자료를 허위·누락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가 누락된 경우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사업 내용 보고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신고,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사업 내용 보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식 소유 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 현황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경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부가적 정보를 누락·오기한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허위·누락 없이 신고·보고 의무를 1년 미만으로 지연한 경우

3. 고발 여부에 대한 적용기준

*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원칙적으로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나,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효과, 의무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과거 의무위반 전력 유무 등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대성 \ 인식가능성	상(현재)	중(상당)	하(경미)
상(현재)	고발	고발	경고/수사기관 통보*
중(상당)	고발	경고/고발**	경고
하(경미)	고발	경고	경고

*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고발하지 않으나,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 가능

**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로서, 행위자의 자진신고 여부, 공시대상기업집단 해당여부, 자료제출 경험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가능

II. 시사점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에서 주식회사 카카오의 동일인 김범수의 기업집단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에서 네이버 주식회사의 동일인 이해진의 기업집단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후에, 이번 고발지침 제정을 통해 고의 즉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기준을 구체화·체계화 하였습니다.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물론 경미한 경우에도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규제에 대응하여 관련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정위의 고발 급증 추세에 대비하여, 공정위 단계에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방어하고자 공정거래 형사사건 업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공정위 자문관·검사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이 포함된 **공정거래형사팀**을 구성하여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 주식회사의 동일인이 20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위 동일인에 대하여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형사팀은 위 사건에서 인식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각도로 검찰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검찰로부터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지침 제정안에는 이러한 네이버 주식회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